

2026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안내



“중소사업장의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사고사망을 예방하고
대·중소기업 또는 원·하청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01 지원조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1. 뿌리공정 보유사업장*	2.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3. 상생협약 체결사업장	4.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사업장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 ▶ 주조 ▶ 소성가공 ▶ 표면처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 중, ▶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209)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229) ▶ 식품제조업(200) ▶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204) ▶ 금속제련업(219)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중, ▶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282)

* 뿌리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활용기술이 주조, 소성, 표면처리로 표기된 사업장 | ** 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완납증명원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적용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원청을 통해 위험공정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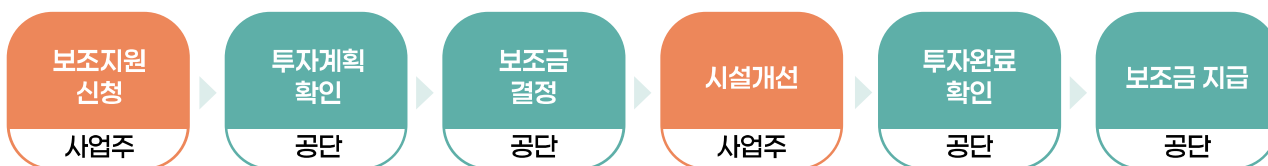
1. 원청 직접지원	2. 상생관련기금 연계 지원	3. 공단 상생협력사업 매칭지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규모의 원청으로부터 직접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하청 상생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공단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을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02 지원금액 및 절차 기존설비 폐기조건

구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지급비율 (지급한도)	(정부) 공단 판단금액의 50% (1억원 한도)	(정부) 공단 판단금액의 40% (8천만원 한도) (원청) 소요비용의 최소 10% (또는 2천만원)

※ 자부담 비용에 대해 산업재해보상시설 용자금 지원사업 신청가능(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결정 후 신청한 경우에 한함)

지원절차



03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26.2.13 ~ 재원 소진 시까지('26년 재원 3,320억원)

☑ **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신청불가)

